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9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백혜련·조 국·이기헌

서영석 · 황정아 · 이병진

민병덕 • 안태준 • 윤종군

이재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보험업법 시행령」은 "전화"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마련된 업권별 모범규준 역시 법률보다 구분을 세분화하여 "전화권유판매"와 "화상권유판매"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등).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화상권유판매 등(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을 "방문판매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을 "방문판매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를 "방문판매등으로"로, "방문 또는 전화가"를 "방문・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이"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을 한다.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이하 "방문판매"라 한다)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이하 "전화권유판매"라 한다)
- 3. 화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와 금 융상품판매업자등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화상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하 "화상권유판매"라 힌다)

4. 그 밖에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제21조의2의 제목 중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등"으로한다.

제69조제4항 중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을 각각 "방문판매등을"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 ① ----다음 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각 호 중 어느 하나의-----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화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상권유판매 등(이하 "방문판매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등"이라 한다)을-----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 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 문판매(이하 "방문판매"라 한 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신 설>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 화권유판매(이하 "전화권유 판매"라 한다) 3. 화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 <신 설>

<신 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 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③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③ 방문판매등으로-----

의 매체를 활용하여 금융소 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화 상을 통해 권유하는 방법으 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업장에서 또는 온라인 매 체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 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금융상 품을 판매하는 방식(이하 "화상권유판매"라 힌다)

4. 그 밖에 유선·무선·화상통 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식

2		 		
		 	- <u>방문</u>	판매
등	<u>을</u>	 		

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해당 <u>방문 또는 전화가</u>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u>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u>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1조의2(<u>방문판매 및 전화권유</u> <u>판매</u> 관련 준수사항) ① ~ ⑥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생략)

<u></u> 방문·전화
<u> </u>
<u>방</u>
<u>문판매등을</u>
제21조의2(<u>방문판매등</u> 관련 준수
사항) ① ~ ⑥ (현행과 같
<u>⇔</u>)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 <u>방문판매등을</u>
<u>ਸੁ</u> ੇ
<u>문판매등을</u>
⑤ (현행과 같음)